

## 【 5 】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2003. 2. 25  
제출자 양주군수

### □ 개정이유

- 2003년도 행정자치부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이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득함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조항 내용을 보완하고,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및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개정과 명칭변경에 따라 관련명칭을 수정하고자 함.

### □ 주요골자

- 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소유 자동차세에 대한 감면 조항의 단서 조항중 보철용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 차세를 추징토록 되어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렵고, 보철용또는 생 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단서조항을 삭제함(안 제2조내지 제3조)
- 나. 노인복지시설중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해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하고 있으나, 이 경우 무료노인복지시설과 일반노인정은 과세되는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유료」라는 용어를 제외하고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로 개정함(안 제6조)
- 다. 기존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이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2001. 1. 29 분리제정됨에 따라 조문내 용을 개정함(안 제13조)

- 라.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법”이 통합되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제정되어 2003.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법규명칭을 개정함(안 제16조)
- 마. “중소기업의구조개선 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이 폐지되고, 대체법안인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이 2002. 3. 30 제정됨에 따라 관련법규명칭을 개정함(안 제17조)

양주군조례 제 호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단서 및 제3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6조중 “유료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가”를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 및 수산물품질 관리법 제1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하는 자가”로 한다.

제16조제1항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15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로, “동법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 및 도시계획에”를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로 하고, 동조제2항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로, “동법 제26조”를 “동법 제32조”로 한다.

제17조중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를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 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생략)</p> <p>②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의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p> <p>다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p> <p>1. ~ 4. (생략)</p> <p>③(생략)</p>	<p>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현행과 같음)</p> <p>②-----</p> <p>-----</p> <p>&lt;삭제&gt;</p> <p>1. ~ 4. (현행과 같음)</p> <p>③(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p> <p>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의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p> <p><u>다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u></p> <p>1. ~ 4. (생략) ②(생략)</p>	<p>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p> <p>①-----  <u>&lt;삭제&gt;</u></p> <p>1. ~ 4. (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p>
<p>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p> <p>노인복지법에 의한 <u>유료노인복지시설</u>을 운영하는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u>유료노인복지시설</u>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p>	<p>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u>노인복지시설</u> ----- ----- <u>노인복지시설</u> ----- ----- ----- ----- ----- ----- -----</p>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u>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u> 의한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③(생략)</p>	<p>제13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u>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u> 가공업자 및 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하는 자가          ② ~ ③(현행과 같음)</p>
<p>제16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①  <u>도시계획법 제3조제15호의 규정에</u> 의한 공공시설용토지로서 <u>동법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u> 의하여 도시계획결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제16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①  <u>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u> <u>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u>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p>

현 행	개 정 안
<p>② <u>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u>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u>동법 제26조</u>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 된 토지 및 지상 건축물(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 대상을 제외한다.</p>	<p>② <u>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u>----- <u>동법 제32조</u>  -----  -----  -----  -----  -----  -----  -----  -----</p>
<p>제17조(재래시장재개발 ·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u>중소기업의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u>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 · 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한다.</p> <p>1. ~ 2. (생략)</p>	<p>제17조(재래시장재개발 ·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u>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u>  -----  -----  -----  -----  -----  -----  1. ~ 2. (현행과 같음)</p>